

제30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1월 16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법인인 「강서대학교」와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사무의 지속성 확보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규모)	직원 현황	現 위탁현황	
				수탁법인명	수탁기간
강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현주	화곡로18길 14-5 (299.9㎡)	18명	강서대학교	2019. 5. 9. ~ 2024. 4. 30. (5년)

나. 민간위탁 사무 내용

-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전반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다. 위탁기간: 2024. 5. 1. ~ 2029. 4. 30.(5년)

라. 선정방법: 재계약¹⁾

마. 소요예산: 5,584,036천원

(국비 1,103,032천원/ 시비 1,567,362천원/ 구비 2,913,642천원)

바. 추진일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2024년 3월
- 협약체결: 2024년 4월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부칙 제3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2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사무의 지속성 확보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로서,
 - 현재 운영 법인인 「강서대학교」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인과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및 위기청소년 발견, 지역자원 연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위탁 사무이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²⁾에 위탁하여 사무를 운영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수의 계약의 일종인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재계약을 위한 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적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참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연혁**

연번	위탁기간	위탁법인	비 고
1	2010. 3. ~ 2013. 12.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담복지센터 개소(시립)
	(2012. 8.)		(시립 → 구립)
2	2014. 1.	사단법인 흥사단	위탁체 변경
3	2019. 5. 9.	케이씨 대학교	수탁체 변경으로 인한 재위탁
	(2022. 4. 9. ~ 현재)	강서대학교	케이씨대학교 → 강서대학교 교명변경

참고

비용추계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매해 인건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4년~2028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세출	1,092,246	1,106,245	1,117,307	1,128,478	1,139,760	5,584,036
	사업운영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092,246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수당 • 퇴직급여부담금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474,647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비, 유지보수비 - 통신료 및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 시설관리비 등 각종 부대 경비 - 실무자 출장여비 	377,467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도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교육 및 부모/가족 교육 프로그램 - 거리상담 연합행사 - 1388 헬프콜청소년전화 - 교육연수 및 홍보비 - 상담 및 매체치료(심리검사) •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직원 워크샵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240,132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국비	216,239	218,401	220,585	222,790	225,017	1,103,032
	시비	304,816	310,942	314,051	317,191	320,362	1,567,362
	구비	571,191	576,902	582,671	588,497	594,381	2,913,642
	합계	1,092,246	1,106,245	1,117,307	1,128,478	1,139,760	5,584,036

6. 작성자: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담당자: 행정9급 송여진 02-2600-6764)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1240호, 2019.7.17.)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2(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의 목적과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 시 책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